

**산업통계 전문가회의**  
**참 가 보 고 서**  
**(Expert Group Meeting on Industrial Statistics)**

**2005. 9. 19.~9. 23.**  
**(미국 뉴욕)**

**통 계 청**

# < 목 차 >

I. 참가 개요 .....	1
II. 회의일정 및 내용 .....	1
III. 회의결과 (요약) .....	3
1. 매뉴얼의 포괄범위 .....	3
2. 통계단위 .....	6
3. 자료수집전략 .....	12
4. 산업생산지수 .....	15
5. 향후일정 .....	17
<참고자료> .....	18
1. 생산지수매뉴얼(IIP-50) 주요개정내용 .....	18
2. IIP-50 개정관련 UN질의에 관한 각국답변 .....	24
3. 산업통계 주요개정내용 .....	26
4. 캐나다의 Business Register 운용사례 .....	30
5. List of participants	
6-1. Revision of the International recommendations for statistics on economic activities	
6-2. Country comments on issues raised in the discussion paper	
7-1. Revision of the International recommendations for index of industrial production	
7-2. Composition of the UN List of industrial productions	
7-3. Summary of responses to the questions on index numbers of industrial production	
8. Institutional units in the corporation sectors in the 1993 SNA	
9. Treatment of ancillary units in 1993 SNA	
10. The Canadian integrated approach to economic surveys	

# 산업통계 전문가회의

## I. 참가개요

- 회의명 : Expert Group Meeting on Industrial Statistics
- 주 관 : UNSD (United Nation Statistics Division)
- 장 소 : 미국 뉴욕 (UN-빌딩2)
- 기 간 : 2005. 9. 19.~9. 23.
- 한국 참가자 (2명)
  - 산업동향과장 김 광 섭
  - 통계분석과 정 동 욱
- 참가자 명단 : 붙임 참조

## II. 회의일정 및 내용

- 9월19일(월)
  - 생산단위로서 사업체에 관한 사항
    - 경제활동 관련 통계의 국제권고안 개정 토의
    - 캐나다 SNA에서 산업통계 소개
  - 부가가치에 대한 검토
  - 보조단위/활동
  - country presentation
    - 멕시코, 러시아, 브라질

□ 9월20일(화)

- 통계단위들의 처리문제 토의
  - 법인부문 제도단위 처리
  - 정부와 비정부부문의 SPVs
  - 다국적 기업의 처리에 관한 제안

□ 9월21일(수)

- 자료수집 전략
  - Business Register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캐나다 사례
  - 캐나다의 통합된 경제통계조사 접근법 소개
- 영세소규모 사업체 포함하는 각국의 사례
  - 인도, 말레이시아, 나이지리아

□ 9월22일(목)

- 산업생산지수
  - 현안 및 각국의 의견수렴 결과소개
- UN의 산업생산지수 품목에 대한 토의

□ 9월23일(금)

- 통계위원회에서 의무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통계의 검토
  - 일본통계국에서 주요국에 대해 실시한 산업통계 설문결과 발표
  - 세계화와 관련된 이슈를 포함한 산업통계의 새로운 분야
- 종합토의
- 결론 및 권고

### Ⅲ. 회의결과 (요약)

#### 1. 매뉴얼의 포괄범위

##### □ 현 황

대부분 국가는 농림어업과 공공부문을 제외한 모든 경제활동을 포괄하는 통합된 경제통계조사를 수행한다. 이와같은 방법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갖는다.

- ① 대부분 개도국에서는 농업과 산업부문 자료수집에만 관심을 갖는다. 통합된 경제통계조사설계는 경제활동 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으며 동일한 일반적인 형태를 가질 수 있다.
- ② 사업체정의와 범위 설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체를 경제활동별로 파악하기 위하여 통계조사를 각각 수행하는 것은 많은 비용을 소요하게 된다. 그러므로 개도국에서 고정된 장소에 있는 모든 사업체와 가구를 파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표본조사를 위해서는 모든 사업체가 포함된 frame을 이용하여 산업분류(ISIC)에 따라 활동을 구분하여 이용하여야 한다.
- ③ 대규모 법인기업은 기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거의 모두 포착이 가능하다.

위와 같은 이유에서 통합된 경제통계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IRIS83은 인식가능한 모든 산업부문 사업체를 포함할 수 있는 지침작성을 권고하였다. 다양한 활동에서 사업체의 범위는 관련 사업체의 누락없는 조사 또는 표본추출 방법 등에 의해서 정의되어 질 수 있다. 자료수집방법(우편조사, 면접조사 등)은 각국의 상황에 따라 결정되어진다.

그런데 권고안은 비법인소규모 사업체(unit)에 대한 생산활동을 포괄할 좀 더 세부적인 가이드라인 제공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개도국에서는 주로 제품제조활동을 하는 소규모 비법인(고정 또는 이동성 있는 가내수공업) 사업체의 생산활동을 포함할 수 있는 권고안 제공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특히 산업활동에 기여하는 가계단위의 경우, 일부국가에서는 이 부분을 산업부문으로 다른 국가에서는 가계로 기록하고 있다. 가계단위에 대한 중복을 제거하기 위해서 ①법인기업 ②비법인기업(고정, 비고정) ③비법인기업(가내)과 같은 구분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코멘트 했다.

IRIS83 권고안은 개도국과 선진국의 지침에서 차이가 없다. 이는 동일한 범위와 기준을 제공하고 국제비교를 위함인데 권고안 개정시 개도국의 현안을 특별히 언급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IRIS83 권고안에서 사용하는 조사대상기간은 일반적으로 1월1일부터 12월31일로 정하고 있는데 특정 사업체들의 각각 다른 회계연도 기준자료를 즉시 이용할 수 있는가와 이에 대한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 □ 결 과

- 1) 매뉴얼은 모든 경제활동(단, 농림어업, 공공행정은 제외)을 포함해야 하는가?

매뉴얼은 자료수집 측면을 고려해야 하며, 산업통계는 광의의 경제통계 프로그램의 부분이다. 이런 이유로, 매뉴얼은 일반적인 정의, 원칙, 특성들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데, 이는 필요시 특정

경제활동의 특수한 관점을 다른 내용들과도 상호 공유될 수 있어야 한다. 특수한 상황을 위해 분리된 보조 매뉴얼도 준비되어야 한다. 금융중개에 대한 내용은 본 매뉴얼과 별도로 다루어야 한다.

2) 비법인과 소규모 사업체에 대한 권고안은 별도로 다루어져야 하는가?

비법인과 소규모 사업체에 대한 권고안은 별도로 작성되어야 함에 모든 참가국은 동의하였다. 이는 상기 조사단위에 대한 자료수집이 어려운 국가들을 위한 것으로 매뉴얼은 우수 사례를 제공할 것이다.

3) 조사단위 규모(Unit size)는 종사자수에 기준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가? 어떤 단위가 완전하게 작성되어 지는가?

어떠한 기준으로 조사단위 규모를 결정하는가는 전수조사를 할 것인지 표본조사를 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 문제에 대한 결정은 국가별 상황에 따라 맡겨진다.

4) 개발도상국의 경우, 다수의 소규모 사업체들에 대한 자료수집을 위해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매뉴얼에서 개발도상국의 이 같은 현안을 특정 부문에서 다루어야 하는가?

소규모단위(small unit)에 대한 자료수집을 위한 권고안은 모든 국가에 매우 유용하다. 매뉴얼에서 정도에 따른 단계별대안(최적안, 차선안, 수용가능한 안 등)을 제시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5) 회계연도 자료를 해당연도 자료로 변환하는 좋은 사례는?

한 시스템 자료를 다른 시스템 자료로 변환하기 위해서 보다 세분화된 자료(연간, 월간 등)가 없다면 만족스러운 변환이 될 수 없을 것이다.

## 2. 통계단위

### □ 현 황

산업통계의 목적을 위해서, “통계단위”란 필요로 하는 항목별 자료가 수집될 수 있는 실체로 정의한다. IRIS83은 생산자료의 수집을 위한 통계단위로서 “사업체”를 정의하고 있으며, 금융흐름과 비산업부문의 서비스자료 수집을 위한 단위로는 “기업체”를 이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사업체는 ①단일경영주체와 통제하(단일법적주체)에 ②지배적이고 ③단일장소에서 경제활동유형이 수행되고 있는 경제단위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같이 이상적인 사업체 정의는 산업부문 통계조사와 특히 제조업부문에서 주로 적용한다.

기존 권고안하에서 사업체는 생산자료에서 일반적으로 이용 가능한 가장 세부적인 단위이다. 또한, 사업체에서 수집된 자료는 활동유형과 사업체규모별로 다시 나눌 수 있으며, 이는 분석시 더욱 유용할 것이다.

보조단위와 보조활동은 비산업서비스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업 본사의 판매를 위한 생산활동을 수행하고, 많은 기업의 경우 본사에 위치하며, 동일기업내 소비를 위한 활동에 관계되고 있음. 그런데 SNA93에서는 단위(unit)로 보지 않고 있다. 보조단위 예로는 중앙 행정부서, 창고, 차고, 수리 및 발전소 등의 형태로 주된 활동이 전적으로 모사업체를 위한 것이다.



IRIS83과 SNA93에서 보조활동에 대한 권고안은 다음과 같다.

- (a) 보조활동은 기업내 사업체의 중간투입된 재화/서비스운송으로 볼 수 없으며
- (b) 보조활동이 단일사업체의 이익을 발생시킨다면 보조활동에 의해 발생된 비용은 그 사업체의 비용으로 포함하고,
- (c) 보조활동이 기업내 2개 이상 사업체를 보조한다면, 이는 원칙으로 분리해야 함

그런데 IRIS83은 ISIC의 활동 유형이 아닌 기능의 측면에서 보아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는데, (1) 보조단위의 기능이 1개 사업체의 이익을 위해 수행한다면 보조단위의 활동은 모사업체의 활동과 원천의 총합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2) 지역적으로 보조단위가 떨어져 있다면 지역적으로 분리된 항목에 따라 보조단위 관점에서 자료가 분리 수집되어야 한다.

즉, IRIS83은 함축적으로 모사업체와 보조단위가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다면 “분리된 사업체”로 간주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 □ 결 과

### 1) 사업체의 기준이 좀 더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하는가?

현행 사업체의 정의는 유지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하였으며, 실무적인 면에서 각국의 통계시스템 유지를 위해 취사선택할 수 있는 융통성은 유용할 것이며 option의 실례는 다음과 같다.

- a) 동일한 장소와 동일 경영주체하에서 두 가지 이상의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회계처리를 별도로 하지 않는다면
  - i) 모든 활동은 단일 사업체로 간주된다.
  - ii) 산업활동은 주된 활동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 b) 동일한 활동이 별도의 장소에서 수행되며, 단일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
  - i) 통계조사단위 지역내(읍면동)에 있다면 단일 사업체로 처리한다.  
별도의 장소에서 산업활동이 수행되더라도 동일활동이며 단일회계처리를 하는 경우는 단일사업체로 처리한다. 단, 이 경우 배분은 종사자수 등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 2) ISIC와 제도부문에 의해 경제활동을 구성하는 통계시스템으로서 SNA93은 사업체와 기업을 통계단위로 간주할 수 있는가?
- 3) 사업체와 기업이 통계단위로 간주된다면, 조사표는 어떻게 설계되어야 하는가?

사업체와 기업체는 상호참고자료로서 모두 통계단위로 이용되어야 한다. 이는 비교적 적은 수의 다사업체기업에 유용할 것이다.

- 4) 보조단위(ancillary units)가 모 사업체와 별도의 장소에 위치한 경우 이를 사업체로 간주해야 하는가?
- 5) 위의 경우에 장소 또는 회계가 분리되었을 때만 사업체로 분리해야 하는가?

보조단위는 모사업체와 장소가 떨어져 있는 경우만 사업체로 간주해야 한다. 그리고 보조단위의 주활동에 의해 분류되어야 한다. 보조법인은 SNA에 따라 별도 제도단위로 처리된다. 보조단위의

활동은 회계장부(cost account)가 유지된다면 별도의 사업체들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Guidelines>

- a) 기업이 별도 회계장부(cost account)가 있는 보조단위로 구별되는 형태로 구성된다면 보조활동/단위는 별도의 사업체로 간주한다.
  - b) 통계적 장소가 다른 경우 : 보조단위가 판매/수익이 없을지라도 사업체로 간주한다.
  - c) 동일한 장소의 경우
    - i) 수평적복합기업(Horizontally integrated enterprise)  
보조단위를 갖는 별도의 사업체들이 회계장부(cost account)를 유지한다면 각각의 다른 활동에 따라 구분되어야 한다.
    - ii) 수직적복합기업(Vertically integrated enterprise)  
보조단위를 갖는 별도의 사업체들(ISIC에 의해 대분류가 서로 다른 경우)이 내부기업거래 또는 회계장부(cost account)를 유지한다면 이 경우도 구분 처리되어야 한다.
  - d) 산출물은 부가가치와 중간투입을 더한 총투입 비용에 의해서 측정되어야 한다. 기업 자체의 영업잉여를 포함한 부가가치를 이용하여 보조단위의 부가가치가 산출된다.
- 6) 사업체의 중간소비로서 보조단위의 생산량(output)을 배분하는데 적용할 가장 좋은 지표는 무엇인가?

가능한 지표로서 생산량(output), 종사자수, 임금 및 급여, 부가가치가 있다. 그러나 지표의 선택은 해당 국가에서 결정할 문제임

- 7) 산업통계에 의한 센서스 부가가치 측정이 기업에 의해 각각의 사업체에 지급된 비산업부문 서비스의 비용배분에 의한 부가가치와 가능한 유사하게 작성될 수 있는가?

산업부문 부가가치는 국민계정 부가가치 개념과 근접하도록 권고하였다. 그런데 센서스 부가가치는 산업통계에서 유용한 지표이며 분석을 위해 많은 국가들은 센서스부가가치를 집계하고 공표하고자 한다.

- 8) 별도 사업체가 비산업 부문에 대한 output을 구분할 수 있는가?
- a) 사업체 단위가 아닌 기업단위에서 직접 생산된 경우?
  - b) 사업체단위에서 생산된 경우, 이것을 부차생산물(secondary product)로 처리할 수 있는지?

사업체의 비산업부문 output은 부차생산물(secondary product)로 간주할 것을 권고

- 9) 지주회사 (의미있는 생산물이 있는 경우)

이런 회사는 SNA93에서 제도단위로 분류되며, 현재 SNA93에서 시장생산물 평가에 지침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들의 경제적 영역에서 자회사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주된 경제 활동을 중심으로 분류한다.

- 10) 지주회사 (의미있는 생산물이 없는 경우)

이런 회사는 SNA93에서 제도단위로 분류된다. 생산량은 비용접근법에 의해 측정된다. 지주회사가 그들의 경제적 영역안에 자회사를 갖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경제활동을 중심으로 분류한다.

11) 지주회사 소유의 의미있는 생산물이 있는지의 여부를 명확히 하는 것은 경제활동을 분류하는데 중요하다.

#### 12) 보조법인

보조법인은 별도의 제도단위로 분류한다(SNA개정). 보조법인의 생산량은 비용접근법으로 측정하며, 경제활동에 따라서 분류한다. 생산물이 시장성 또는 비시장성 여부는 추후 더 논의되어야 한다.

#### 13) 다국적기업

자회사, 법적단위 또는 물리적장소가 없더라도 다른 나라(영토)에 있는 분리된 제도단위로 분류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각각의 다른 나라에 있는 기업에 대한 생산은 금융자산과 순자산의 기여도에 따라 일정비율로 배분하기로 결정했다. 다국적기업은 주된 경제활동에 의해서 분류된다.

#### 14) SPVs

금융증권화 기관은 독립적인 제도단위로 구분한다. 그들은 생산물은 비용접근법에 의해 측정되며 경제활동은 금융중개업으로 분류한다.

#### 15) 정부와 관련된 SPV

정부가 “미래수취자산”을 금융증권화 기관에게 판매한 경우, 정부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SNA에서 미래수취자산은 자산의 판매로 인식하지 않는다. 정부와 금융증권화 기관사이의 거래는 경제거래 성질에 따라 기록한다. 기금증식을 위한 정부와 관련된 금융증권화 기관의 다른 형태를 구분하기 위해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야 한다.

### 3. 자료수집 전략

#### □ 현 황

산업통계관련 기존 국제권고안은 사업체센서스와 일정규모이상 연간조사 및 특정 부분의 보완을 위한 표본조사를 권장하고 있다. 연간조사는 벤치마크 자료로 활용하는 부정기적인 조사와 함께 주요한 통계조사이다.

그런데 급속한 기술발전으로 인해, 10년주기 센서스가 통계적 다양성을 설명하는데 충분한가에 대해 문제점과 센서스와 연간조사 등의 기초자료로서 BR(모집단DB, Business Register)활용에 대한 중요성이 제시되었다.

BR을 구축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자료원이 있다. 각각의 자료원은 중복, 누락 같은 문제점을 확인한 후 이용해야 한다. BR을 구축하기 위한 자료원은 다음과 같다.

#### (a) 경제통계조사 (통계조사 결과자료)

- 비용 : 고비용
- 장점 : 물리적 장소를 갖고 있는 사업체와 기업체 포착이 용이하고 동시에 면접을 통한 조사가 가능
- 단점 : 조사원이 장소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체 또는 기업체는 누락

#### (b) 행정정보 (과세목적, 고용보험, 사회보장 등을 위한 행정자료)

- 비용 : 저비용
- 단점 : 통계단위로서 적합성, 정확성 등의 여부를 재 검토해야 하며, 사업체별 규모정보가 별도로 없기 때문

에 사업체단위 표본추출 및 cut-off size를 미리 결정하기 곤란

(c) 기타 : 전화번호부 자료, 무역협회 자료 등

BR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기본정보

- i) 기업체명, 물리적 장소
- ii) 주소
- iii) 기업의 본사명 및 주소, 기업형태(다사업체 여부 등)
- iv) 경제활동유형 (코드화 필요)
- v) 법인여부
- vi) 경영조직형태
- vii) 종사자수
- viii) 매출액규모 및 판매액
- ix) 자료출처

개도국에서는 전형적으로 전 사업체중 소규모사업체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명부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일부 국가에서는 일정 규모이상 사업체만 BR에 포함시킨다.

개도국에서 BR이 정확하게 관리되고 다양한 범위를 모두 포괄하고 있다면 표본조사 수행시 유용한 도구로 이용할 수 있다.

## □ 결 과

- 1) 산업통계에 대한 자료수집 전략은 영세소규모 기업을 포함한 모든 생산 단위의 경제활동을 원칙적으로 포괄하는 접근법에 기초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 2) BR(모집단DB, Business Register)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갱신된다면 이는 산업통계 자료수집을 위한 하나의 중요한 도구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BR에 포함시킬 기업체의 범위에 관하여, 매뉴얼은 관행적이어서는 안되며 시간에 따라 BR의 범위를 확대 가능하도록 다양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 3) 부정기적인 경제센서스를 수행하기 위한 IRIS83 권고안을 반복함으로써 BR에 포함되지 않은 영세소규모 기업체통계 자료수집에 대한 명확한 권고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 4) 제한된 BR과 영세 소규모기업이 많은 국가에 대해서는, 영세소규모 기업에 대한 신빙성 있는 frame을 개발해야 한는데 의견을 모았다.
- 5) 법적, 경영상단위와 통계단위 사이의 체계적인 관련성은 BR에 그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한다. 통계단위의 정의와 선택은 수집된 정보에 결정적으로 의존한다. 이것은 사업체기준 전략에 따랐던 IRIS83의 완화조치이다.
- 6) 각 국은 가능한 현존하는 행정자료, tax자료, 전문가협회 등의 자료를 연결하여 BR을 발전시킬 것을 권고하였다.
- 7) 조사비용 및 응답부담 경감과 자료검증을 위하여 tax자료와 각종 행정자료를 이용한 자료수집을 권고하였다.
- 8) 매뉴얼은 국제비교를 위한 영세, 소규모, 중 및 대규모의 분류기준을 권고하였다.
- 9) 경제활동에 따른 조사단위규모별 구조와 성장을 반영한 통계표에는 명확한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 4. 산업생산지수

개정 매뉴얼은 국가별 지수작성 관련 자료수집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자세한 권고안이 제공되어야 한다. 동시에 이들 권고안은 지침으로서 이용될 것이다.

### □ 매뉴얼의 영역

개정매뉴얼은 향후 지수 통계에서의 필요요건을 미리 고려하고 예상하여 개정해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개정 지수매뉴얼의 범위는 방법상에 유사성과 그러한 지수들에 대한 일반적인 요구들 때문에 서비스생산지수를 포괄하기 위해 확장되어야 한다. 전문용어에서 가능한 불일치(예. SDDS 필요요건)를 조사하고 제거할 필요가 있다.

지수 수치들은 그들 자신의 값도 중요하지만, 가격과 물량지수들이 국민계정체계의 필수적인 부분을 형성한다는 점에도 동의하였고, 매뉴얼 개정시 핵심적인 요소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개발요구와의 연계와 일치가 중요하다.

### □ 범위

개정전 매뉴얼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90% cut-off" 고정된 절사점은 적절하지 않다. 지수 수치계산에 생산의 선택은 그보다는 오히려 고정 백분율에 기초를 두어 산업분류와 일치하는 중요한 대표치를 가져야 한다.

### □ 방법

연쇄 라스파이레스 방법은 연간 및 월간 지수에 대해 권고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이는 더욱 기술적인 지수 수치들에 대해 요구에 균형을 맞추도록 반영한다.

## □ 가중치와 총계(집계)

품목에 대한 자료는 사업체단위이— 지수작성과 같은 중간 단계 없이 직접적으로 산업단위의 지수작성에 이용되어야 한다. 더 상위의 산업분류에 대한 지수는 해당 하위 산업분류지수를 가중평균하여 작성된다. 즉, 4자리 ISIC 단계 지수는 처음은 3자리 ISIC단계 그리고 2자리 ISIC 단계 등으로 총계되어야 한다.

## □ 작성

계산은 각 산업에 대해 디플레이션(가격 정보 필요) 또는 산출 측정, 자재 투입측정, 노동투입측정과 같은 “change of work done”에 대한 기타 접근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선호하는 접근법은 고려중인 산업의 형태에 의존할 수도 있고 매뉴얼은 각 산업에 대한 적절한 지침이 있어야 한다.

## □ 포함된 부가항목

다음 주제에 대한 지침은 이전 매뉴얼 버전에서는 적절하게 포함되지 않았으며 개정판에서 설명되어야 한다.

- 계절 조정
- 음의 부가가치의 처리
- 산출에서 새로운 단위 및 새로운 생산의 처리  
(특별한 경우로서 품질변화의 처리를 포함)

각 국에서는 본 이슈에 대해 실제사례를 UNSD로 제공할 것이다.

## □ 산업 생산의 UN 리스트

### 1) 리스트의 구성

상품의 제안된 리스트에는 동의하였으나 보고서에 각 국가의 가능성에 기초하여 추가 삭제가 가능하거나 보고할 필요가 있다.

### 2) 물량과 가치 자료의 수집

현행 자료수집은 물량과 가치 자료를 포함하도록 확대되는데 동의하였다. 설명은 자료 제공자가 양 및 가치 자료를 구한 것으로 이해하도록 수정되었다. 국가단계의 자료는 조사를 통해 생산되며 UN으로 보고된 수치는 단지 보고하는 단위에 의한 생산만이 아닌, 조정된 국가전체의 자료를 반영해야 한다. 가능한 한, 물량자료 및 가치자료의 보고범위는 동일해야 한다. 국가별로 어떠한 편차라도 주석처리 할 수 있다.

## 5. 향후일정

### □ 2005년

- 2005. 11월말 : 기업 및 산업통계와 생산지수 매뉴얼 개요 작성
- 2005. 12월말 : 통계위원회 보고

### □ 2006년

- 전문가 위원회 구성
- 매뉴얼 초안 작성 및 검토

### □ 2007년

- 최종 매뉴얼 작성

## <참고1> 생산지수메뉴얼(IIP-50) 주요개정내용

### 1. 포괄범위(Scope and coverage)

현재 권고안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부문을 제외한 산업으로서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업, 건설업을 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업 부문까지 포함</li> <li>· 다만, 정부부문이나 비영리법인부분은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임</li> <li>※ 다만, 일본과 같이 전산업을 대상으로 월별지수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li> <li>- 명칭에 대해서는 Industry를 서비스업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보고 IPI를 그대로 사용하자는 의견이 다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괄범위 작성방</li> <li>- 서비스업의 물안에 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절사점과 관련하여, 연간조사는 90% 이상, 월별조사는 2/3 이상을 대표해야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많은 국가들이 절사점을 정할 때 자본이나 고용상황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RIS-83 진행중이와 일</li> </ul>

### 2. 산식(Basic Method)

현재 권고안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정기준식 라스파이레스 지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쇄라스파이레스 지수를 권고하지만 각국의 상황에 따라 다른 방식을 채택할 수 있음</li> <li>- 피셔나 톱크비스트 지수는 이론적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국의 비교가</li> <li>- 연쇄지 기준년</li> </ul>

	로는 가장 적절하지만 문제는 현재 가중치를 구하는 것임	제는 하
--	--------------------------------	------

◇ 캐나다에서는 현재가중치는 이용가능한 가장 최근의 가중치를 의미한다고 해석(Michel Girard)

- 즉 피셔지수의 경우, 2005년지수 작성당시 이용가능한 가중치가 2003년밖에 없다면 이것을 이용하여 작성해도 무방하다고 하며, 미국 FRB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추정방식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음(캐나다에서도 추후 논의를 할 것 같은 뉘앙스였음)
- 또한 현재 93 SNA에서는 연쇄피셔방식으로 GDP를 추계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생산지수 매뉴얼에서 연쇄라스파이레스방식을 권고한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언급

◇ 싱가포르에서도 현재 가중치에 대한 추정의 어려움, 추정을 한다해도 추정치와 확정치와의 갭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중이라고 함(Chua Kia Chee)

◇ 인도에서는 매년 가중치를 변경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만약 연쇄지수를 이용할 경우는 품목 Basket도 변경해 주어야 함을 강조(S.K. Nath)

3. 가중치개념(Weight Variables)

현재 권고안	개정안	
- 순산출(net output)을 이용, 가중치를 작성하여야 하며, 순산출은 CVA (Census Value Added)를 이용하여 도출됨	- CVA는 93 SNA에서의 부가가치개념과는 차이가 있고 IRIS-83 개정과정에서 SNA 개념쪽으로 접근해야한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음	- 현재 IF 가치 개 ※ 부가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만, 순산출과 CVA는 그 차이가 별로 없으며, 생산자가격으로 평가된 CVA도 이용가능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따라서 산업생산지수의 가중치 작성 시에도 이러한 부가가치 개념이 이용되어야 할 것임</li> <li>- 또한 많은 국가들이 간접세, 보조금 등을 고려한 생산자가격기준 부가가치를 작성하고 있는 실정임</li> <li>※ 감가상각비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들이 고려하고 있지 않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금, 여부는</li> </ul>
<p><b>현재 권고안</b></p>	<p><b>개정안</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수산출시 Census Industry 수준에서 가중치를 부여하고 이를 가중평균하여 산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SIC 4자리 수준까지 가중치 부여</li> <li>※ 대부분의 국가들이 품목별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IS 이것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가중치의 배분과 관련해서는 권고안이 마련되어있지 않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품목별 부가가치의 작성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산업별 부가가치율을 이용하는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품목부가가치 = 생산량×단가×산업별 부가가치율</li> </ul> </li> <li>b.사업체 부가가치를 이용하는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체의 기여도에 따라 산업별 부가가치를 배분한다음, 품목별 기여도에 따라 품목별로 부가가치 배분</li> </ul> </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차생산</li> </ul>

◇ 100개 국가들을 대상으로 분석해보면 약 3/4정도가 센서스부가가치를 이용하여 가중치를 산출하고 있으며, 나머지 약 1/4 만이 국민계정상의 부가가치개념을 이용한다고 함(UNIDO)

- ◇ 마이너스 부가가치에 대한 논의도 있었으나,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개념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통계적인 이슈다라는 정도로만 논의되고 세부적인 사항은 차후 논의하기로 함

#### 4. 가중치 변경(Updating the weights)

현재 권고안	개정안	
- 매 5년마다	- 연쇄지수를 작성하는 경우 가중치는 매년 변경되며, 새로운 사업체나 품목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게 됨	- 제품사... 새로운... · 품목을... 현실...

#### 5. 지수편제(Compilation of indices)

현재 권고안	개정안	
- Work done의 측정을 위해서 다음의 세가지 계열이 이용될 수 있음 a. 산출: 생산량 b. 투입: 투입량(원재료, 전력 등) c. 노동투입: 조업시간 등	- 투입계열의 경우 생산성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할수만 있다면 가장 좋은 계열이 될 수 있음 · 특히 서비스업부문의 경우 생산량의 측정이 어려우므로 투입계열을 이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있음	- 서비스... 조사해... 수로 다... 가에 다...

#### 6. 기준년도 개편 및 접속방법(Rebasing and Linking index series)

현재 권고안	개정안	
- 기준년도 개편시 1년간 병행조사	- 연쇄라스파레스 등 연쇄방식으로 지	

	수를 작성하는 경우 병행조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음	
--	------------------------------	--

## 7. 기타논의사항

### ◇ 품질반영문제

물리적인 단위의 변화로 파악된 수량지수는 work-done의 양적변화를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 → 품목의 세분화, 금액조사계열의 확대 등이 논의될 수 있음(세부적인 논의는 없었음)

### ◇ 자료수집(Data Collection)

IIP-50에서는 산업생산지수를 월별로 편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현재 분기별로 작성하고 있는 국가들도 많음, 또한 전자통신 기술의 발달로 웹기반조사도 몇몇 국가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음



## <참고2> IIP-50 개정관련 UN질의에 대한 각국답변

### Q1) 산업의 포괄범위

- 응답한 모든 국가(8개국)들은 현재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업 (일부국가는 수도업제외)에 대해서 생산지수를 작성하고 있음
- 또한 일부국가들은 농업, 건설업, 도소매 및 서비스업에 대해서도 생산지수를 작성중에 있음
- 생산지수의 포괄범위의 조정은 전통적인 개념에서가 아닌 각국의 현재 상황에 맞추어서 이루어져야할 것임

### Q2) 작업량(Work done)에 대한 측정

-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은 작업량의 측정을 위해서 Output 계열을 이용한다고 응답하였으며,
  - 조사방법은 직접 Output을 측정하는 방법도 있고, 금액계열을 조사한 후 수량화시키는 방법도 있음
  - 다만, 건설, 선박수리, 항공기, 철도차량 등에 대해서는 노동시간을 이용하여 지수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었음(1개국가)
- 미국의 경우는 Output 계열이 가능하다면 사용하고 그렇지 않다면 Input 계열(전력사용량, 원재료사용량 등) 혹은 노동시간을 이용

### Q3) 서비스산업에 대한 생산지수작성여부

- 호주와 한국만이 서비스산업에 대한 생산지수를 작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브라질은 소매업지수를 작성한다고 응답

#### **Q4) 지수작성시 세분가능한 산업분류수준**

- 기본적으로는 국가별 필요성과 가능성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나, 특히 관심있는 업종의 경우는 가능한한 세분화하는 것이 필요함
- 국제비교라는 차원에서는 ISIC 2자리(KSIC로는 소분류) 이하로 세분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보임
- 광공업의 경우에는 2자리로 가능할 것이나, 서비스업종의 경우는 1자리로 밖에 작성할 수 없는 국가들도 있을 것임

#### **Q5) 지수 작성시 쓰이고 있는 산식**

- 미국(연쇄피셔지수)과 호주(연쇄라스파이레스지수)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고정라스파이레스지수를 사용하고 있음
  - 브라질의 경우 분기 GDP 추계시 연쇄지수를 사용
- ※ 호주는 현재 가중치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연쇄라스파이레스지수를 쓴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하였으며, 미국의 경우는 현재 가중치를 추정하여 사용

#### **Q6) 연쇄지수 작성가능성**

- 4개국(미국, 호주, 브라질, 독일)은 현재 작성가능하다고 하였으며, 3개국(한국, 싱가포르, 인도)은 불가하다고 응답(단, 한국은 현재 연쇄지수도입을 검토중임을 언급)

### <참고3> 산업통계 주요개정내용

#### □ 포괄범위(Scope and coverage)

현재 권고안	개정안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수의 국가에서는 모든 경제활동을 포함(농림어업, 공공행정을 제외)한 통합된 경제 통계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나, 포괄범위 확대에 관한 권고안은 현재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경제활동으로 확대하는데 동의하였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적인 정의, 원칙, 특성들에 관한 사항에 초점을 둔 개정안 작성필요</li> <li>- 특정 경제활동과 상황에 대한 분리된 보조매뉴얼도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법인 소규모사업체에 대한 별도 권고안이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별도로 작성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하였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리된 권고안은 자료 및 frame의 유용성 확보를 위해 매우 유용하며, 비법인 소규모 사업체에 대한 자료수집이 어려운 국가를 위해 우수 사례를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함</li> </ul>

현재 권고안	개정안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단위 규모를 특정 기준에 의해 결정하도록 하는 권고안이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권고안은 필요하나, 국가별 상황에 따라 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li> <li>- 종사자수를 기준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중소기업체 조사를 위한 표본추출, 대규모사업체 조사를 위한 유용한 기준이 될 수 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단위 규모는 표본추출 및 조사대상 정의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발도상국의 소규모 사업체 조사를 위한 현안에 관한 권고안이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규모사업체에 대한 자료수집을 위한 권고안은 모든 국가에서 유용하다. 개도국만을 대상으로 할 문제가 아니라는 데 의견을 함께 했음</li> <li>- 다양한 방법을 모든 국에 제시할 권고안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규모사업체에 대한 조사는 모든 국가에서 고비용이 소요된다.</li> <li>- 각 국의 사례를 토대로 특정 상황에서 적용가능한 권고안 작성 필요</li> </ul>

□ 통계단위 (Statistical Unit)

현재 권고안	개정안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권고안에서 사업체에 관한 좀 더 명확한 정의 필요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사업체에 대한 정의를 유지하는데 동의하였음</li> <li>- 단, 각국의 통계시스템 유지를 위해 실례를 통해 융통성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일한 비용계정하에서 서로 다른 장소에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체와 같은 경우 좀 더 명확한 정의가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체와 별도의 장소에 보조단위가 위치한 경우와 비용계정의 분리여부에 따른 처리 등의 권고안이 없음</li> </ul> <p data-bbox="248 1098 799 1189">· 보조단위의 생산은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조단위가 사업체와 장소를 달리하는 경우만 별도의 사업체로 간주하는데 동의하였음</li> </ul> <p data-bbox="824 1098 1413 1141">- 각국의 상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별개의 사업체로 인식하는 기준은 비용계정 보다는 장소분리 여부를 주요 기준으로 본다.</li> <li>- 배분 기준으로 종사자수를 많은 국가에서 제시하였으나, 생산물의 속성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언급하였음</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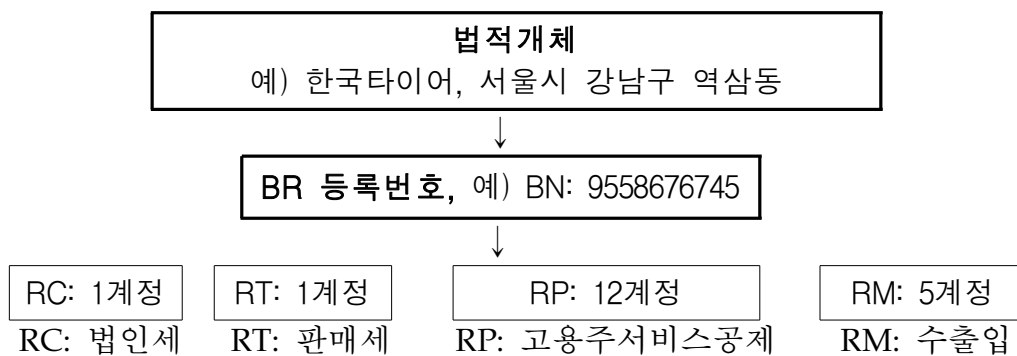
현재 권고안	개정안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국적기업의 처리문제에 관한 권고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회사, 법적단위 또는 물리적 장소가 없더라도 다른 나라에 있는 분리된 제도단위로 분류하기로 결정하였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국적기업은 주된 경제활동에 따라 분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거주자 소유의 비법인기업을 별도 제도단위로 처리하는 권고안 개정의 필요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별도의 제도단위로 인식하는데 동의 하였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명목(개념상) 거주단위로 인식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li> <li>- 현실적으로 동 단위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음</li> </ul>

## <참고4> 캐나다의 Business Register 운용사례

### □ 개요

- 캐나다의 경제통계조사는 캐나다 통계청에서 개발되고 관리되어 오고 있는 BR(Business Register)을 바탕으로 실시되어오고 있음
  - BR<sup>1)</sup>은 1980년대에 처음 도입되어 발전되어왔으며, 현재는 90여개 이상의 통계조사의 모집단 역할을 하고 있음
  - BR은 통계조사를 통해 직접 수집된 자료는 물론 과세자료와 같은 행정자료를 통해서 얻은 간접적인 자료까지 포괄하고 있음
- BR은 재화와 용역의 생산과 관련된 Business들의 목록이며, 영리사업, 비영리사업, 종교, 정부부문 등 모든 부문을 포괄하고 있음<sup>2)</sup>
- Business는 그 구조와 복잡성에 있어서 너무 다양하므로 그 실체를 적절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BR이 확립되면, 식별번호, 위치, 연락처, 조직형태, 산업분류, 고용, 영업이익 등과 같은 많은 정보들을 유지, 관리하는 것이 가능해짐

### < Business Number의 구조 >



1) 캐나다 통계청내 Business Register Division(BRD)에서 담당하고 있음

2) 종사자가 없거나 연간 판매액이 3만달러 이하인 비법인기업은 제외

## □ BR의 구조

- 기업체와 사업체는 경제 Survey를 실시하게 되는 주요단위이며, 기업체는 복합기업체(CE)와 단순기업체(SE)로 다시 구분됨
- CE는 서로 다른 산업활동을 영위하는 다수의 사업체로 이루어진 경우, SE는 단일사업체로 이루어졌거나 혹은 같은 산업활동을 영위하는 다수의 사업체들로 구성된 경우임

### < 캐나다 기업체 현황 >

	기업체수	사업체수	판매액비중
- 복합기업체	21,000	115,000	62%
- 단순기업체	2,240,000		38%

### 1) 법적 구조

- Business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적인 지위가 필요하며 이것이 있어야만 국세청(CRA: Canada Revenue Agency)과 같은 정부기관으로부터 실체를 인정받을 수 있음
- 매년 Businesses는 CRA에 소득세신고를 해야하며 이러한 신고자료는 상호합의에 의해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캐나다 통계청에 통보되어지며 이를 이용하여 BR의 갱신이 이루어짐
- 법적 구조는 BR 상에서 유지, 관리되고 있음

### 2) 운영상 구조

- 실제 운영에 있어서 Business는 법적인 조직구조에 의하기보다는 다른 형태의 조직구조로 운영되는 것이 보통인데, 그 구조는 회계처리방식 등과 관련된 운영방법에 따라 결정됨



- 예를 들면, 법적으로는 단일하다 하더라도 수개의 공장을 가질 수 있으며 또한 도소매업체를 소유할 수도 있음
- 이러한 것들은 모두 단일한 하나의 법적 실체에 속하지만 운영상 구조로는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단위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러한 운영상 구조가 BR의 주된 관심사항임
- 통상, BR의 일부로서, 운영단위는 피고용자, 원재료, 관리자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회계단위로서 인식되어야 하는데, 회계단위는 운영상 조직의 기본을 이루며 다섯가지 유형으로 구분됨
  - a. 투자센타 : 영업이익을 원천으로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
  - b. 영업이익센타 : 특정한 부분의 수익과 비용을 관리
  - c. 비용보전센타 : 제공된 물품과 서비스에 대한 비용회수
  - d. 비용센타 : 운영상 목적으로 사용된 비용을 식별
  - e. 수익센타 : 부문별 수익 및 필요한 경우 한계비용을 관리
- 운영상 구조는 전적으로 경기상황과 개별기업체의 관리방법에 따라 다양성을 가지며, 그 결과 실제의 구조는 운영상 조직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 따라서 기업체 및 생산조직의 개념정의를 위한 통일적인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3) 통계적 구조

- 효율적인 표본추출을 고려할 때, 서로 동질적인 단위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더욱 중요한 것은 생산, 재화, 서비스, 자본흐름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 조사단위에 대한 표준적인 개념정의를 하는 것이 필수적임

- 어떤 통계조사는 사업체의 고용상황에 대한 조사를 하고, 어떤 조사는 재무상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데, 이러한 조사를 위해서는 먼저 Businesses에 대한 표준적인 정의가 선행되어야함
  - 캐나다 통계청에서는 이를 통계적 구조라고 부름
- 통계적 구조는 모든 Businesses를 네 단계의 수직구조의 형태로 BR에 정의하고 저장하기위한 일련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가장 상위단계는 기업체(Enterprise)이며 가장 하위단계는 소재지(Location)이며, Company와 사업체가 중간단계임
  - a. 기업체 : 가장 상위단계이며, 완전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고 자금의 국제적인 흐름도 관리하는 주체임. 기업체는 하나 혹은 다수의 Company를 보유하고 있음
  - b. Company : 영업이익과 투자이익에 대한 파악을 가능하도록 하는 대차대조표와 관련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동질적인 생산을 하는 사업체(들)를 가지는 단계
  - c. 사업체 : 생산과 관련된 가장 동질적인 단계이며, 산출물, 배용, 서비스 및 임금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단계이며, 사업체는 하나 혹은 다수의 소재지를 가질 수 있음
  - d. Location : 고유의 물리적인 생산단위이며, 고용상황에 대한 자료입수가 가능한 단계
- 단일생산조직의 경우는 모든 단계를 포괄하고 있음
  - 즉 하나의 사업체가 기업체, Company, 사업체, Location을 모두 의미함
  - 모든 최하단위의 통계적 구조(Location)에 대해서 산업분류코드가 부여되며 상위단계의 산업분류는 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하위단계의 산업분류에 의거해서 정해짐

## □ 통계조사와의 관계

- BR은 각종 통계조사의 모집단들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개별 통계조사가 시행됨
  - 통계조사의 각 주기(연, 분기, 월)에 맞추어 BR로부터 표본들이 마련되면, 이를 토대로 표본이 선택되고 자료수집단위가 준비됨
- 통계적 단위는 캐나다 통계청에서 조사를 위해 구축된 개념이므로 실사단계에서 관련사항에 대한 조사가 어려울 수가 있음.
  - 따라서 응답자료 및 조사에 대한 조정이 필요함. 이는 다수의 조사 결과를 통합하는 것일 수도 있고 요구되는 자료보다 세부적인 자료에 대한 조사일 수도 있음
- 응답결과를 조사단위에 대한 개념에 맞추어 적용하기 위해서는 조사된 정보를 조사단위에 분배하기 위한 배분과정이 필요함
- 시간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표본관리파일에 포함되어서 관리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연동표본과 관련된 조사간의 중복을 조절할 수 있음. 나아가서는 이것이 조사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역할도 함
- 마지막으로 응답자, 조직구조, 규모 등에 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 이를 반드시 기록하여야하고 이는 BR의 갱신에 이용됨

## □ 갱신메카니즘

- BR은 세가지 경로를 통해 갱신이 이루어짐. 대규모 및 복합기업체의 경우는 직접 조사를 통해 갱신이 이루어지며, 이는 BRD내에서 수행되고 관리됨
  - 그 외 대부분의 기업들에 대해서는 CRA에서 제공되는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갱신이 이루어짐.

- 법률로 기업체들은 CRA에 일련의 자료(Good and Service Tax Collected, Payroll Deduction, 연간소득세 양식 등)를 제출하게 되어있음
- GST 및 PD 자료는 월간단위로 수집되며 기업활동상황을 판단하는 주요한 정보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업체를 포착하는 역할도 하게 됨
- 또한 기업체들은 피고용자, 과세대상인 판매액정보, 기업체의 규모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게 됨. 연간소득세자료는 개별기업에 대한 보다 상세한 자료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와 관련된 두 개의 자료로는 법인기업자료(T2)와 비법인기업자료(T1)이 있음
- 실제 조사에서 입수된 기업체의 조직과 산업분류와 관련된 새로운 정보는 BR에 feedback 되고, 추후 BR 자료의 갱신에 이용됨